

이용절차



보증상담

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
공사 콜센터(1688-8114) 문의



신청접수

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
보증신청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



보증심사

보증가능 여부 및 보증가능
금액을 결정하여 통보



대출실행

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약정 체결 및
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 실행

* 보증 이용 시 연 0.02%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.

* 신용관리정보 보유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주택금융 종합 플랫폼 '주택금융포털'



- 지도기반 부동산 시세정보 등 제공
- 이용자의 LTV, DSR 정보 확인
- 대출가능금액 및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 조회



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(2023-0049,2023.9.6)

'23.9월 기준



청년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

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전 · 월세 자금보증



HF 한국주택금융공사

www.hf.go.kr

1688-8114

※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공통요건

보증대상자

-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* 세대주**
*신청인 및 배우자(배우자예정자 포함) 기준
**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
-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

대상주택

아파트,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(주거용)오피스텔
(기숙사, 고시원은 취급 불가)



청년전세자금보증

보증요건

- 공통요건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
- 임차보증금이 7억원(지방은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
 -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납부

보증한도

임차보증금의 90% 이내에서 최대 2억원

보증신청시기

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

- ※ 반전세 등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청년전세와 청년월세의 중복 이용 가능
※ 취급 기관 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수협, 전북은행,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

청년월세자금보증

보증요건

- 공통요건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
-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,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
 -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
 -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

보증한도

최대 1200만원(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 이용 시 600만원)

보증기간

- 최대 13년
- 거치기간 : 최대 8년(연단위)
 - 분할상환기간 : 3년 또는 5년

※ 취급 기관 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경남, 수협은행

대환자금보증

금융기관*에서 이미 받은 전·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을 보증하는 상품

*은행, 보험사,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, 신협, 지역농협, 수협 등

보증요건

-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고,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
- 청년월세자금보증 또는 청년전세자금보증 요건을 충족

대환대상대출 요건

-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 시**
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용도의 대출로서 대출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
- 청년월세자금보증 이용 시**
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자금용도의 대출로서 대출실행 후 1개월 이상 경과

보증신청시기

제한없음